

원자력법시행령중 개정령의 주요골자

1. 제안이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2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원자로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함에 있어 원자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주요 기기·부품·설비 등의 강도·성능 등에 관하여는 원자로시설의 공사중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방사선에 의한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정된 원자로시설 주변의 제한구역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람의 거주를 일체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자로의 건설·운영과 관련된 교육·훈련 목적에 한하여 그 일시적인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안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원자력관계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103조제3호가목 단서 신설).

다. 원자로 운영자는 마약류 등의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원자로 운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약물복용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여금 원자로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제고함(안 제106조제10호 신설).

라. 모법의 개정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이동사용 또는 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6조 신설).

마.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등에 대한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 방사선 장해의 우려가 적은 시설·용기의 경우에는 피검사자가 제출한 자체점검 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로 당해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관계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함(안 제199조제2항 및 제239조의3제3항 신설).

바. 모법의 개정으로 관계 행정기관이 원자로나 폐기시설 등의 주변지역에 원자로 등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변지역의 범위 및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97조의8 신설).

사. 기술진보에 따른 최신기준의 반영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 하던 원자력이용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50조 내지 제101조, 제155조 내지 제164조, 제181조 내지 제191조, 제207조 내지 제219조, 제229조 내지 제234조, 제240조 내지 제281조의2 삭제).

원자력 법령 위반기관 및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학기술부는 감사원이 실시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99. 1.25 ~3.12) 결과 원자력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이용기관 및 개인에 대해 청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 (99.7.19)

- 방사성물질의 하역후 오염검사 미실시, 방사선량율 미측정등 원자력법의 운반규정 및 자체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5개 회사에 대해 법 제68조1항7호에 따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허위신고하거나 선임하지 않은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위반기간 및 부도(법정관리)등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68조1항7호에 따라 750 -1,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간의 업무정지에 처함.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9명에 대해서는 법 제93조3호에 의거 모두 면허취소 처분함

과학기술부는 향후 방사선의 부가가치 및 이용분야가 계속 증가하는데 따른 방사선 피폭사고등의 위험요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함께 최소한의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 하므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자료제공 :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02- 503-7654,5)